건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설도시국장		
제출연월일	2023. 2. 10.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9호

제출연월일 : 2023. 2. 10.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제안이유

충청남도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지적사항으로 상위법(주차장법)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별표 3)을 상위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주차장법)에 맞도록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금액 조정(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대상아님

3) 규제심사 : 대상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 13. ~ 2. 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안전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브	후 서	성		명
입	교 통	과 장	하	봉	수
안	교통시	설팀장	김	만	수
자	담 및	당 자	홍 (74	도 6-62	균 57)

[별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8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법 제24조제1호	250만원
경우		
2.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법 제24조제2호	250만원
갖추지 않은 경우		
3.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24조제3호	150만원
4.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장의 시설 개선 명령에	법 제24조제4호	250만원
따르지 않은 경우		
5. 노외주차장의 시설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	법 제24조제5호	150만원
해한 경우		

비고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별표 3] [별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I8조제I항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8조제1항 관련) 해당법조문 위 반 행 위 과장금 금액 근거 법조 과징금 위 반 행 위 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법 제6조제1항 50만원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법 제24조 250만원 위반 한 때 등을 위반한 경우 제1호 2. 정당한 <u>사유없이</u>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법 <u>제17조제2항</u> 50만원 250만원 2.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 법 제24조 거절한 때 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제2호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위반 한 때 3.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 법 제24조 150만원 제3호 한 경우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4.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장의 시설 개 법 제24조 250만원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호 5. 노외주차장의 시설 검사를 거부·기 법 제24조 150만원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피 또는 방해한 경우 제5호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고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불 임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ㅇ 해 당 없 음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ㅇ 해 당 없 음

- 나. 추계결과
- ㅇ 해 당 없 음

3. 작성자

교통과장 하 봉 수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 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3.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 리자만 해당한다)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같다.

참고 2

관련공문 (발췌)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논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알림

- 1. 충청남도 안전정책과-12137(2022.12.6.)호와 관련됩니다
- 2. 2022년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하여 「총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불일과 같이 처분요구를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2023.1.30.(절)까지 불임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 규칙 제16조에 따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처분요구시항 조치결과 보고

- ◆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지 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아울러, 「총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처분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경계 또는 문력 및 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불임 1. 감찰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서식) 1부. 끝

주무판 정숙자 감사팀장 21명호

기획감사실장 현원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2960

(2022, 12, 10.)

접수 교통과-20275 (2022. 12, 11.)

총청남도 논십시 시민료210번길 및 기회감사실 (내용) /

ED28 / sail 221@bares to / HERE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말섭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일련번호 : 2022-30

처 분 요 구 서

[행정상 : 주의, 동보]

[제 목]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소홀 【소관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소관무서】 안전도로파, 원스톰허가파

자치법규 과징금 규정 부적합

주차장법 제24조에 따라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 리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 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과징급 250만원)
- .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럽 방지시설과 미끄럽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과징금 260만원)
- .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파징금 150만원)
-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 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과징급 250만원)
-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과징금 150만원)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과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정급의 급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조과할 수 없으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산시 안전도로파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5개 위반행위 중 4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규정, 법령에서 명시한 과정금의 증감 벌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금액으로 조례 규정, 법 제24조제3호 및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외 다른 위반행위까지 병과하도록 조례 규정하는 등 부적정한 과정금 규정 시행을 확인하였다.

<표 1> 파징금 관련 규정 및 자치법규 현황

위반행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5)	논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3)	조례 가능한 과징금 범위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50만원	50만원	125~375만원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250만원	120	125~375만원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150만원	50만원	75~225만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50만원	50만원	125~375만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150만원	50만원	75~225만원

【조치할 사항】

논산시장께서는

- 주차장 운영 여부를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행정절차 및 후속조치(주차장 시설 설치 또는 주차장 안내표지 등 철거) 이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안전도로파)
- 2. 건축 인혀가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설치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분장 철저, 주차장 업무 관련 달당자 및 관리자의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원스 롭혀가파, 안전도로파)
- 3. 공영주차장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기록을 1개월 이상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안전도로과)
- 자체소방점검표(외관점검표) 법정 서식 사용, 관리수탁자의 점검결과 확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안전도로파)
- 5. 법령 내에서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관련 조례(또는 시행규칙) 재정 비 검토 이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안 전도로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짛지(80g/m²))

道 안전정책과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3을 주차장법 제24조와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통보